

守其의 家系와 권내교감기*

A Study on the Family Line of Soogi and
Correct Records in Buddhist Sutras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권내교감기 |
| 2. 수기의 家系 | 4. 교감기의 대비 |
| 2.1 本姓 | 5. 결 언 |
| 2.2 入籍 | <참고문헌> |

< 초 록 >

수기는 『신조대장경』, 곧 『팔만대장경』을 조성할 당시 대장경의 오류를 바로잡는 책임자였다. 당시 수기 등이 교감한 결과는 교정별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경의 많은 불전 속에 수록되어 있다. 곧 권말에는 문장형식의 교감기록이 있고, 권중에는 교감대상의 문구 다음에 간략한 교감기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기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 탓에 지금까지 수기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기의 가계를 살피고, 또 문장형식의 권내교감기록을 선별하여 교정별록과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기는 이규보 부인의 집안 아우였으며, 후일 유승단의 손자 또는 아들로 입적되었다. 둘째, 권내교감기에서 사용된 “향본”은 교정별록에서는 “국본”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그것은 고려의 자주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권내에 소재한 교정기록 중에서 문장 형식은 69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24건은 교정별록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었다. 넷째, 고종 31년(1244)에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서제 형식의 교감기는 향후 분사대장도감의 연구영역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要語: 수기, 신조대장경, 팔만대장경, 교정별록, 이규보, 유승단, 국본, 향본

* 이 논문은 『고려대장경과 강화도』라는 학술회의(2011.8.10)에서 발표한 “교정별록의 완성과 초기인본의 봉안”이라는 글 중에서 전반부를 선별하여 보완한 것임.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cheon.ac.kr)

접수일: 2011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Soogi was in charge of correcting the errors of the *New Carved Goryeo Tripitaka*, also known as *Palman Daejanggyeong*,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Soogi's corrections were included not only in *Gyojeong byeollok*, but also in many Buddhist sutras of Tripitaka. The corrections were written in sentences at the end of the volume, and the brief records of correction followed the text to be corrected in the middle of the volume. Nonetheless, an independent research on Soogi has not been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records on him. In this research, Soogi's family line has been studied, and the records of correction written in sentence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Gyojeong byeollo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ogi was a first or second cousin of Lee Gyu-bo's wife and later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ry as Yu Sung-dan's grandson or son. Second, in *Gyojeong byeollok*, Soogi used the term "Gukbon (woodblock-printed book of the Goryeo)" than "Hyangbon" in order to emphasize Goryeo's independence and cultural identity even in the times of international turmoil. Third, 69 items of corrected records written in sentences were found in the Tripitaka, and 24 of them were not included in *Gyojeong byoullok*. Finally, the record of correction in the type of prefaces engraved from Bunsa Daejangdogam in 1244 need to be further studied.

Key words: Soogi, *New Carved Goryeo Tripitaka*, *Palman Daejanggyeong*, *Gyojeong byeollok*, Lee Gyu-bo, Yu Sung-dan

1. 서 언

『개보척판대장경』이 처음 완성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송나라에서도 이 대장경의 교정본인 咸平本, 天禧本, 熙寧本¹⁾ 등이 조성되는 등 보다 정확한 대장경의 완성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고려 역시 정확하지 않은 불전들은 교감하여 수용함으로써 고려만의 독자적인 대장경을 완비하고자 하였다. 그 때 守其는 『신조대장경』, 곧 『팔만대장경』을 조성할 당시 대장경의 오류를 바로잡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수기 등의 정확한 교감으로 인해 우리의 대장경이 후일 한문대장경의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감의 책임자인 수기에 관한 기록은 『동국이상국집』과 『보한집』 등에 아주 단편적으로 전할 뿐이다. 그래서 수기의 가계나 이후의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탓에 지금까지 수기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록들을 거듭 살피고, 또 족보 등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수기의 가계와 행적의 일부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수기와 대장경은 물론 국내 교감학 연구에도 일조할 것이다.

한편 수기 등이 교감한 결과는 교정별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경의 많은 불전 속에도 수록되어 있다. 곧 권말에는 문장형식의 교감기록이 있고, 권중에는 교감대상의 문구 다음에 간략한 교감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정별록에 수록될 수 있는 문장형식의 권말교감기 중에는 교정별록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가 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권내에는 없으나 교정별록에만 수록되어 있는 교감기도 있다. 그래서 권내의 교감기 중에서 문장형식의 교감기들을 찾아 교정별록 수록분과 대비하면 서로의 독자성과 특성 그리고 교정별록 찬술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문제, 곧 수기의 가계와 교정별록과 권내교감기와의 관계 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呂澂은 “宋刻蜀版藏經”(『呂澂佛學論著選集 3』(濟南: 齊魯書社, 1991), 1425-1431)에서 咸平(998~1003) 초기의 初校本인 함평본, 天禧(1017~1022) 초기의 再校本인 천희본, 熙寧 4년(1071) 이후의 교정본인 희령본 등 『개보척판대장경』의 교정본 셋을 소개하고 있다.

2. 수기의 家系

수기는 守眞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개태사의 승통 守眞는 박학정식하여 왕의 명령으로 대장경을 교감하였다.”²⁾는 『보한집』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본 『보한집』 중에서 안정복 친필 추정 의 『성호사설』 뒷면에 필사된 『보한집』에는 <사진 1>과 같이 守其로 되어 있다.³⁾



<사진 1> 守其로 쓰여진 『보한집』과 해당 면

이러한 차이는 이 사본이 수기로 된 다른 계통의 『보한집』을 보고 전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眞”을 “其”로 단순하게 오사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보한집』에서 수기를 수진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능화는 이 사실에 대해 수진은 “혹 수기로 된 곳도 있다.”⁴⁾며 일찍이 지적해 두었다.

2) 崔滋, 『補閑集』. “開泰寺僧統守眞, 學博識精, 奉勅勘大藏經, 正錯如素所親譯 … 今爲五教都僧統.”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0238-6).

4)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서울: 寶蓮閣, [1972]), 658. “開泰寺僧統守眞(或有作守其處).”

또 緣山三大藏經緣記의 서문에는 “沙門宋其等 參訂校讐”⁵⁾와 같이 수기를 송기라고 하였다. 『보한집』에서의 “眞”과 연산삼대장경연기의 “宋”은 각각 “其”와 “守”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라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혹이 든다는 점을 밝혀 둔다.

2.1 本姓⁶⁾

수기는 비문이나 행적 등 그와 관련된 문헌이 부전하는 탓으로⁷⁾ 그의 僧系⁸⁾는 물론 가계나 속성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행히 같은 시기에 살았던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의 시와 詩註에 수기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있어 도움이 된다. 이규보가 지은 그의 장인인 대부경 晉昇의 제문에 따르면 당시 결혼 후 거처는 남자가 그 부인을 데려왔던 전과는 달리 처가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규보도 진승의 둘째 딸과 결혼⁹⁾ 후 그의 장인 댁에 거처하게 되었고 고 한다.¹⁰⁾ 이 때 이규보는 장인 댁에서 처음 어린 수기를 만나 한 집에서 살았던 것이다.¹¹⁾ 그런데 이규보가 시주에서 자신과 수기와의 관계에 대해 “予婦之堂弟”¹²⁾라고 하였다.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사용한 “予○”와 같은 표현은

-
- 5) 『昭和法寶總錄』 第2卷 (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34), 緣山三大藏經緣記序.
“其國素有前後二藏, 及契丹藏, 殊令沙門宋其等, 參訂校讐, 經十四春秋, 版新成.”
- 6) 수기의 본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교정별록의 완성과 입장에 대한 고찰”(『서지학연구』 제18집, 1999)에서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 7) 수기에 대한 초기의 자료로는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이 있다.
- 8) 수기의 僧系에 대해서는 “義湘의 華嚴宗系”(李載丙, 『韓國佛教史之研究』 (서울: 동계문화연양사, 1946), 84), “대각국사 義天의 제자인 圓明의 후예”(오용섭,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연구,” 『서지학연구』, 장간호(1986), 219)로 보고 있다.
- 9) 이수, [이규보묘지명]. “娶大府卿晉昇第二女, 生男四女二.”
- 10)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37, 애사 제문. “祭外舅大府卿晉公文.”
『동문선』 권109, 제문. “祭外舅大府卿晉公文”, “古者親迎, 婦嬪于壻, 其賴婦家, 無有幾許. 今則娶妻, 男歸于女, 凡已所須, 婦家是據, 姑舅之恩, 有同怙恃.”
- 11) 『동국이상국후집』 권5, 고을시 89수, 次韻其公見和. “憶昔逢公乳臭時(시주: 予於外舅家初逢, 在一家), 一家親炙未曾離, 信然詐作阿難比(시주: 來詩, 以我比阿難), 還有親緣慎莫遺(詩註: 於予婦爲堂弟).”
- 12) 국역본에서 “予”를 “子”로 보아 “子婦”, 곧 며느리의 당제라고 하였다. 문자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시주에서도 그의 처남 썬생을 “予妻兄晉君”이라고 한 점¹³⁾으로 보아 그가 익히 사용하는 표현방식이었다.

당제란 집안의 4촌이나 6촌 아우를 일컫는 말이다. 『고려사절요』에는 “경종이 병환이 낫지 않자 당제인 개령군 치를 불러 선위하였다.”¹⁴⁾는 기사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경종과 개령군 치(성종)는 4촌간으로 개령군 치가 5살 아래의 아우이다. 이렇게 4촌 아우를 당제로 일컫은 고려 때의 기사를 보더라도 수기를 이규보 처의 4촌 또는 6촌 아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더욱이 이규보는 다른 시에서 수기와의 관계에 대해 “親緣”, “親因” 등 용어를 사용하고¹⁵⁾ 있으므로, 수기는 이규보 부인의 4촌 또는 6촌 아우가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수기의 속성은 “晉壤 晉氏”가 된다.¹⁶⁾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성씨 중에 “진양”을 본관으로 삼은 진씨는 없다.¹⁷⁾ 그래서 족보를 통한 수기의 가계 분석은 한계를 가진다. 수기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이규보 관련 기록으로 본 수기

출 처	원 문	해 설
[이규보묘지명] 『여주이씨 세보』	娶大府卿晉昇第二女 晉壤 晉氏	대부경 진승의 둘째 딸과 혼인 (부인은) 진양 진씨
『동국이상국후집』 권5 고을시 (次韻其公見和)	憶昔逢公乳臭時(詩註: 予於外舅家初逢, 在一家) 還有親緣慎莫遺(詩註: 於予婦爲堂弟) 葶薄親因尙不遺	(장인 진승의 집에서) 처음(어린 수기를) 만나 일가를 이루었음 (수기는) 내 부인의 당제 이규보는 수기에게 친연, 친인이라고 함

이규보의 처가에서 이규보 며느리의 당제가 함께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이규보, 『동국이상국후집』 권1, 고을시 105수. “次韻崔士宗粹和舊詩見訪.”의 시주, “初自予妻兄晉君別墅受知.”

14) 『고려사절요』 景宗 6年(981) 秋7月. “王疾彌留, 甲辰, 召堂弟開寧君治, 內禪.”

15)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권5, 고을시. “復用前所寄詩韻寄其僧統并序”, “葶薄親因尙不遺.”

16) 『여주이씨세보』 권1 (서울: 여주이씨문순공과대중회, 1989), 2.

17) 국내 썬씨는 남원 썬氏가 있다.

2.2 入籍

수기의 가계와 관련해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기록이 있다. 그것은 유승단(1168~1232)의 제문이다. 제문에는 아들이 없던 유승단은 수기를 아들같이 길렀고, 병이 심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수기에게 뒷일을 부탁하자 수기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¹⁸⁾ 유승단의 제문은 수기를 대신하여 이규보(1168~1241)가 지은 것이다. 그런데 유승단이 사망한 뒤에도 유승단과 同年이자 동갑인 이규보는 9년 더 생존해 있었다. 그렇다면 수기는 유승단의 사망이후 제사를 주재하는 등 아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고, 유승단의 아들로 입적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승단의 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유승단은 한미한 출신이었으므로 선대의 가계는 전하지 않고, 인동 유씨의 시조가 되었다. 공개되어 전하는 『인동유씨족보』¹⁹⁾ 중에서 빠른 시기의 것은 1921년의 간본²⁰⁾과 1929년 4월 15일의 조선총독부의 수입일자가 찍힌 검열제 사본이 있다. 1921년 간본 역시 1929년 5월 20일의 조선총독부 수입일자가 찍혀있다. 수입일자가 비슷하고, 또 사본의 검열 당시 삭제 요청된 문구가 간본에서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간사본은 동일한 시기의 족보임을 짐작할 수 있다.²¹⁾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간사본을 대상으로 유승단의 초기가계를 살핀다.

인동 유씨는 유승단을 시조로 하여, 承碩 成烈 형제(1세) - 守基(2세) 순으로 가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주석의 설명에서 이러한 가계의 설정이 선대로부터 확정되어 전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 참고한 옛 기록에

18)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권37, 애사 제문. “祭兪丞相文(代守其首座行).”

19) 『인동유씨족보』는 庚午譜(1750), 己卯譜(1879), 辛酉譜(1921) 등이 있었음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다.

20) 유한모, 『仁同兪氏族譜』 (경성: 유한모, 1921).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1929년 4월 15일의 수입일이 찍혀있는 검열제 필사본(고조-58-30-3)과 1921년(대정10년) 8월 간본(고조58 가30-5, 1929년 5월 20일 수입일이 찍혀있음)의 석인본 『인동유씨족보』는 앞부분의 수록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유승단으로부터 수기 등에 대한 기록은 동일하다.

는 이와 다른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 장남인 승석에 대해서는 “옛 기록에 따르면, 공은 문안공(승단)의 아우로 되어 있다.”, “『송씨가서』에는 공의 직함이 문안공의 직함과 같다.”²²⁾

둘째, 1세 차남인 성렬에 대해서는 “『대동운부군옥』에는 승단, 승렬형제는 모두 문장으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다.”²³⁾, “이를 따르면 시랑공(승석)과 검교공(승렬)은 모두 문안공(승단)의 아우이다.”²⁴⁾

셋째, 2세인 수기에 대해서는 “세상에 전하기를 시랑공(승석)은 공(수기)으로 써 큰 형인 문안공(승단)의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 “옛 계보에는 공(수기)을 직계로 하여 문안공(승단) 아래에 둔 것이 또한 많다. 우선 이(사실들)를 적어 후일에 상고하도록 갖추어 둔다.”²⁵⁾

위의 세 내용을 종합하면, 1세로 입적된 승석과 성렬은 유승단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유승단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입적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면 된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입적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함께

22) 公諱一云, 升夷, 高麗禮部侍郎. 按古書, 以公爲文安之弟. 又按公之職銜, 『宋氏家書』, 書以嘉善大夫, 禮曹參判 贊成, 似是文安公之職銜, 而誤傳者. 禮曹參判, 卽是禮部侍郎之訛也. 舊錄公歷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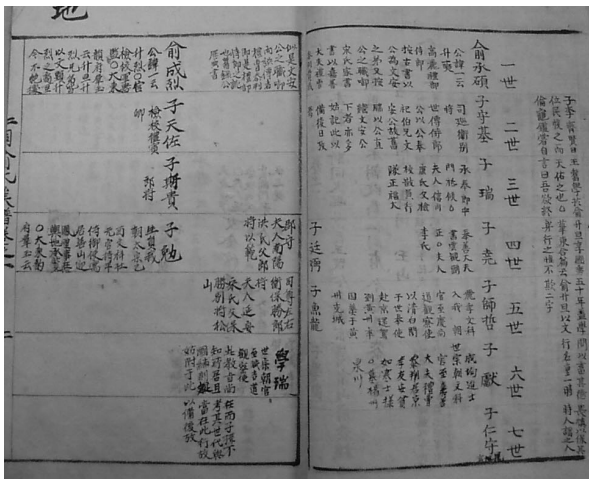
23) 『大東韻府郡玉』 권3. 上平聲, 兪, 姓氏, 仁同(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연구회 역주, 서울: 소명, 2003, 국역 59, 원문 448)에는 “升朝升烈兄弟, 皆以文顯, 升烈之裔, 至今不絶.”과 같이 “(兪)升旦”이 “(兪)升朝”로 되어 있다. 이는 태조의諱인 旦을 피하여 다른 자로 代字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기록 중에서 “유승단”을 “유승조”로 대자한 사례가 보인다. 곧 『紀年東史約』에는 유승조의 죽고와 생전의 일화에 대한 내용이 전하는데 사망한 시기(1232), 내용, 文安이라는 시호 등 모두가 유승단을 설명한 내용이다(李源益, 『紀年東史約』 卷6 高麗紀, 壬辰19년(1232) 7월. “參知政事 兪升朝卒, 升朝, 以文行名, 重一時, 時人, 謂之人倫龜鑑, 嘗自言, 曰吾欲終身行之, 惟不欺二字, 諡文安, 嘗過尙書 朴仁碩家, 仁碩有藻鑑待之盡禮, 人問其故, 答, 曰此人如照夜神珠, 求不可得, 況敢自致.”).

24) 公諱一云, 升烈. 官檢校軍器監. 大東韻府郡玉云, 升旦升烈兄弟, 皆以文顯. 升烈之裔, 至今不絶. 據此則侍郎公, 檢校公, 皆文安公之弟, 而於序檢校公, 當爲侍郎公下, 公下故依舊牒還錄于此.

25) 司巡衛別將, 世傳侍郎公, 以公奉祀, 伯兄文安公. 舊牒以公直繼, 文安公下者, 亦多. 姑記此, 以備後日攷焉.

입적되어야 할 친인관계의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족보상의 큰 아들인 승석이 유승단의 제사를 자신이 모시지 않고 수기에게 모시도록 한 점과 수기가 유승단의 직계로 된 계보도 많았다는 사실 역시 승석이 족보와는 달리 유승단의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승단에게는 동생과 먼 친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²⁶⁾

유승단은 동생과 먼 친속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죽은 뒤의 일을 수기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글을 대신 지어 준 이규보와 주위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었으므로 유승단의 동생들이 감히 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동유씨족보」와 유승단의 제문을 통해 보면, 「인동유씨족보」에 二世로 입적된 守基는 守其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기는 유승단의 아들 또는 후손으로 입적되어 그의 제사를 모신 사실이 확인된다.



<사진 2> 「인동유씨족보」에 입적된 守其(守基)²⁷⁾

26)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권37, 예사 제문. 祭兪丞相文(代守其首座行), “豈無同胞。亦有踈屬。”

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58-30-3).

3. 권내교감기²⁸⁾

대장경 조성사업은 선종 승려들이 주관할 수 있지만 경전의 이론적인 측면은 교종승려들의 협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고,²⁹⁾ 그 대표로는 화엄종의 수기가 선발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교정별록의 권두 하단의 “沙門 守其等 奉 勅校勘”과 대장목록의 준예밀함의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 海東沙門 守其 編”³⁰⁾ 등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수기 혼자서 그 많은 대장경을 교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等”이라는 자신의 역할구분을 삽입하였을 것이다. 이 “等”에 속하는 인물들은 경전에 정통한 승려들로 생각되지만 기록에는 전하지 않는다. 혹 “남명천화상승증도가사실을 교감한 舉上人, 흥왕사의 교학승통인 天

28) 교감이란 ‘異本들을 비교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定本을 확정’하는 것이다. 교감의 형식은 일정한 규칙은 없으나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유형이 있다(『百度百科』). 곧 첫째,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고치는 경우(據改, 據刪 등), 둘째, 착오로 확정하는데 이견이 없는 경우(疑脫, 拙作 등), 셋째, 여러 본의 異同을 교감하는 경우(某本作某, 某本有某 등), 넷째,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을 남기는 경우(未詳, 待考 등) 등으로 구분된다.

수기 등의 교감기 중에서 권중에 소재한 교감기는 위의 유형 중에서 세 번째 교감형식이 대부분이고, 권말과 교정별록의 교감기는 네 종류의 교감형식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수기는 이러한 교감기 중에서 여러 교감형식을 두루 포함하는 교감기들을 따로 엮어 교정별록이라는 명칭을 주었다. 더욱이 교정별록과 권내교감기에 함께 수록된 아미담비바사론 권14의 교감기에는 “校正後序”라는 序題가 있고, 권내교감기에만 있는 아미담비바사론 권55과 집고금불도론형 권4에서는 각각 “校正序”, “重校序”라는 서제를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수기 등은 교감기 중에서 문장형식으로 작성한 교감기들은 “校正”한 것으로 취급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교감기가 권중과 권말에 산재해 있으므로 권중과 권말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권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교정도 교감의 범주에 속하므로 교정이라는 용어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교감기란 『十三經注疏校勘記』, 『論語註疏校勘記』, 『重刊宋本十三經註疏附校勘記』 등과 같이 예부터 서명의 일부분으로도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그래서 수기 등이 교감한 기록 모두를 교감의 형식이나 장단을 구분하지 않고 권내교감기이라고 통칭한다.

오윤희(『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서울: 불광, 2011), 240, 246)는 권중의 교감기에 대한 논의는 없이 권말에 소재한 것에 대해 卷末校正記라고 일컬으면서 “교정별록보다 다양한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교정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일차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교정별록은 “각 문헌을 교정하게 된 까닭을 기록한 교정기와 새로 교정한 원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29) 허홍식, 『한국중세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4), 168.

30) 대장목록 권하.

其 등은 물론 해당 경전 및 내용을 잘 아는 민간의 儒佛學 지식인들”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³¹⁾ 그런데 수기가 대선사인 志素와 선사인 湛其 등과 교유³²⁾하였다고 해서 이들을 교감작업의 참여자로 볼 수 없듯이 교감작업에 동원된 인물들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30권의 별권으로 구성된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건수는 총 70함 77건³³⁾으로 이들은 대체로 목록에 따라 편성되었다. 대체적인 교감내용은 대장경을 조성할 당시 전하던 國本, 宋本, 丹本 및 여러 불교목록을 이용하여 경명과 권수는 물론 경문의 결락, 중복, 도치, 착란 및 역자 문제까지 바로 잡고 있다. 이 교정별록은 자체연구 외에 내용분석을 통해 대장경의 계통이나 대비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³⁴⁾ 또한 일찍이 중국에서도 교정별록의 가치를 알고 『頻伽精舍大藏經』의 목록부에 입장하였고,³⁵⁾ 교감내용만을 선별하여 『麗藏新雕本校記』라는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³⁶⁾

한편 수기 등이 완성한 교감기는 교정별록에 모두 수록된 것이 아니라 각 불전의 권내에도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³⁷⁾가 완성되기 전에는

31) 최연주, 『고려대장경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118.

32) 이규보, 『동국이상국후집』 권제6, 고을시 96수. “二十九日. 又邀僧統守其, 大禪師志素, 禪師湛其及雙岳住老, 金員外設酒. 卽席得詩一首贈之.”

33) 교정별록에서는 起世經(澄함)과 起世因本經(取함), 釋摩訶衍論 권10(廻함)과 大宗地玄文本論 권20(漢함)을 각각 하나의 교감기로 편성해 놓았다. 내용상으로는 두 경론의 교감기이지만 교감기는 1건이므로 1건씩으로 취급하였다.

34) 오용섭,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연구,” 『서지학연구』 창간호(1986), 213-249.; 강순애,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의 분석을 통해 본 초조 및 재조대장경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7집(1994), 103-146.; 배상현,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과 수기,” 『민족문화논총』 제17집(1997), 57-84.; 강순애, “고려대장경교정별록의 학술적 의의,” 『서지학연구』 제20집(2000), 253-297.; 김윤근, “고려 ‘국본’대장경의 혁신과 배경,” 『민족문화논총』 제27집(2003), 59-142.; 유부현, “‘고려재조대장경’에 수용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2(2004), 73-94.; 오윤희,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서울: 불광, 2011), 239-277.

35) 『頻伽精舍大藏經』 권38 목록부 (上海: 빈가정사, 1913).

36) 『麗藏新雕本校記』 (南京: 內學院, 1935).

37)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가 완료됨으로써 이러한 권내교감기도 다양한 검색어로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권내교감기를 검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권내교감기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논급만 있었다.³⁸⁾ 이러한 권내교감기는 국본, 송본, 단본을 상호 대비한 결과를 증보와 삭제, 자구의 수정, 품명의 차이 지적, 오자나 결자 지적을 하거나 당나라 불교목록 등에서 역본의 종류 등을 참고로 수정하는 등 교정별록보다 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 권내교감기는 권중과 권말에 나누어져 있는데 권내는 주로 단편적인 교감내용을 삽입하였고, 권말에는 교정별록 수록의 교감내용과 유사한 문장형식의 교감기가 수록되어 있다.

권중의 교감기 중에서 賢愚經의 경우 무려 45곳에서 품차의 차이를, 마하반야바라밀경에는 23곳에서 품명의 차이에 대해 교감해 놓았다. 만일 이 교감기들을 모아 현우경이나 마하반야바라밀경의 권말에 둔다면 이 역시 상당한 분량의 교감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정별록에 수록된 여러 교감기의 유형을 볼 때, 이러한 교감기는 교정별록에는 수록될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중의 교감기들도 수기 등의 교감의 결과이며, 오늘날 정확한 대장경을 이루게 된 바탕이 된 것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권중과 권말에 산재하는 교감기들을 가려내어 다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권내교감기 중에서 고려본, 즉 國本을 鄉本 또는 鄉藏으로 일컫은 사례를 수집하니 <표 2>와 같다.

<표 2> 권내교감기 중 국본(고려본)을 향본 또는 향장으로 명칭한 사례

차례	불전명 및 권수	간년	국본의 명칭	교정별록에서의 명칭
1	대방등대집경 권30	1244	宋鄉藏, 宋鄉, 宋鄉本	미수록
2	대방등대집경 권59	1243	宋鄉二本, 鄉宋藏	國宋二本, 國宋本
3	불설월등삼매경(K.0182) 권1	1242	鄉宋二藏, 鄉宋藏	미수록
4	불설월등삼매경(K.0183) 권1	1242	鄉宋二藏	國宋二藏
5	불공견사다라니자제왕주경 권중	1239	宋鄉二本	미수록
6	최승불정다라니정제업장주경 권1	1243	丹鄉二藏	미수록
7	보살영락경 권8	1243	鄉本	미수록
8	불설불명경 권1	1242	丹鄉	미수록

38) 오용섭, “교정별록의 완성과 입장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18집(1999), 193-220.

차례	불설명 및 권수	간년	국본의 명칭	교정별록에서의 명칭
9	불설불명경 권8	1241	丹鄉本	미수록
10	불설불명경 권10	1241	鄉丹二本	미수록
11	불설불명경 권11	1242	丹鄉	미수록
12	불설불명경 권12	1241	丹鄉	미수록
13	과거장엄집천불명경 권1	1242	鄉本	미수록
14	현재현집천불명경 권1	1243	丹鄉	미수록
15	미래성숙집천불명경 권1	1242	丹鄉	미수록
16	대방편불보은경 권1	1242	鄉本	미수록
17	보살중도술천강신모태실광보경 권3	1242	丹鄉	미수록
18	오불정삼매다라니경 권4	1243	鄉本	미수록
19	불설마역경 권1	1242	丹鄉二本, 鄉	國丹二本, 國丹本
20	불설보살투신이아호기탑인연경 권1	1242	丹鄉本	미수록
21	본사경 권3 ³⁹⁾	1243	宋鄉, 宋鄉本	國宋, 國宋本

<표 2>에서 보듯이 1239년부터 1244년까지 국본 대신에 향본(향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는 21건이 있다. 교정별록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한 국본, 국송본, 국단본을 권내교감기에서는 향본, 송향본(장) 또는 향송본, 단향본 또는 향단본으로도 일컫고 있는 것이다. 국본을 향본으로 일컫은 것은 우리의 것을 비하한 것이다. 그러나 권내교감기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국본으로 일컫은 사례도 많다. 이렇게 국본을 국본과 향본으로 함께 일컫은 것은 다수의 교감자가 교감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용어가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소개한 21건은 모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간년은 기해년(1239) 1종, 신축년(1241) 3종, 임인년(1242) 10종, 계묘년(1243) 6종, 갑진년(1244) 1종 등이다.

그런데 21건의 사례 중에서 4건은 교정별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별록에서는 “향”을 “국”으로 수정해 놓았다. 나아가 송본과 단본을 국본보다 앞세운 송향본 또는 단향본이라는 명칭도 국본을 먼저 내세워 국송본 또는 국단본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국본을 송본이나 단본보다 앞세우고, “향”을 “국”으로 수정한 의도는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성과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을

39) 권3은 간년이 없으나 권2,4는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년이 있다. 그러므로 권3도 계묘년에 새긴 것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으로 보아 삽입하였다.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교정별록에 수록된 교감기들은 문장형식이다. 그래서 권내교감기 중에서 권중에 있는 단문의 교감기들은 제외하고 문장형식의 교감기들을 선별해 보았다. 가령 대방등대집경은 권1·30·59의 권말에는 장문의 교감기가 있고, 권8·20(2개처)·42에는 단본과 국송본이 문자가 다른 경우 “丹本云”이라는 주석형식의 교감기가 있다. 이 중에서 장문의 교감기 3건은 교정별록과의 비교대상으로 선별하고, “丹本云”과 같은 간단한 주석형식의 것들은 제외하였다.⁴⁰⁾ 이러한 문장형식의 교감기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대략 69건이 발견된다. 이들은 간년에서 보듯이 고종 26년(1239) 또는 이전부터 해당 불전의 권중이나 권말에 첨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고종 33년(1246) 초기, 대장경이 완성될 때까지 줄곧 계속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교정별록과 유사한 문장형식의 권내교감기

차례	불전명 및 권수	간년	교정별록 수록 교감기와 유사한 용어
1	大方等大集經 권1	1243	校正後序, 國本, 宋本, 丹藏
2	大方等大集經 권30	1244	宋鄉藏(本), 丹藏
3	大方等大集經 권59	1243	宋鄉二本, 丹藏, 舊鄉宋藏
4	(국송본)佛說月燈三昧經	1242	鄉宋二藏, 丹藏
5	(단본)佛說月燈三昧經	1242	丹藏, 鄉宋二藏, 丹本
6	佛說彌勒下生經	1239	開元錄, 丹藏, 宋藏, 伏俊賢哲
7	佛說彌勒下生成佛經	1239	開元錄, 宋藏, 丹藏
8	佛說申日經	1243	開元錄, 同本異譯, 以俟來哲
9	佛說灌洗佛形像經 권1	1239	宋藏, 宋本, 丹本
10	佛說摩訶剎頭經 권1	1239	宋藏, 丹本
11	六字神呪經 권1	1239	宋藏, 丹藏, 今除之云
12	最勝佛頂陀羅尼淨除業障呪經 권1	1243	宋藏, 丹鄉二藏
13	佛頂尊勝陀羅尼經 권1	1243	宋藏, 丹藏, 丹本
14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1240	丹藏, 開元錄, 宋本, 今雙存之
15	佛說須眞天子經 권1	1239	丹本, 宋本, 丹本
16	佛說佛名經 권9(菩提流支譯)	1241	宋本, 諸本

40) 대방광불화엄경 권3,4,5,8,10,11,12 등에도 7건의 교감기가 수록되어 있으나 교정별록의 수록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표 3>에 수록하지 않았다.

차례	불전명 및 권수	간년	교정별록 수록 교감기와 유사한 용어
17	佛說佛名經 권10	1241	鄉丹二本, 錯重載
18	佛說菩薩本行經 권상	1242	丹藏錯耳
19	五佛頂三昧陀羅尼經 권4	1243	開元錄, 丹本, 鄉本
20	蘇悉地羯羅供養法 권상	1245	丹藏, 國宋藏
21	蘇悉地羯囉經 권하	1245	國本, 宋(本), 丹本
22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권1	1241	丹本, 諸本, 丹藏, 二本
23	佛說魔逆經 권1	1242	開元錄, 宋本, 鄉(本)
24	大乘寶積經論 권1	1242	宋藏(本), 諸藏本, 開元錄
25	攝大乘論釋 권9(眞諦 譯)	1243	三國本皆闕, 今依本論加之
26	中邊分別論 권상	1242	校曰, 元曉疏云, 從此始誤後數皆錯
27	唯識二十論 권1	1243	丹藏, 故今不取
28	(국송본)大乘法界無差別論 권1	1244	國宋藏, 開元錄, 丹本
29	(단본)大乘法界無差別論	1244	丹藏(本), 國宋二藏(本), 譯者錯耳
30	雜阿含經 권4	1244	國宋二本, 丹本
31	別譯雜阿含經 권5	1244	國宋二本, 丹本(藏)
32	別譯雜阿含經 권13	1243	丹藏, 脫之耳
33	起世經 권1	1243	宋藏, 丹藏, 開元錄
34	起世因本經 권1	1244	宋藏, 丹藏, 開元錄
35	佛說受歲經 권1	1243	丹藏, 丹有宋無, 宋藏, 開元錄
36	頻毘娑羅王詣佛供養經 권1	1243	國本, 宋本, 丹本, 開元錄
37	舍衛國王夢見十事經 권1	1243	國宋二本, 丹本, 以待賢哲
38	佛說四未曾有經 권1	1243	國宋兩本, 丹本
39	摩登伽經 권하	1243	丹藏, 校曰
40	佛說海八德經 권1	1243	法蘭譯, 錯爲羅什譯耳
41	本事經 권3	무간기	校正後序, 宋鄉本, 丹本
42	佛說大安般守意經 권하	1243	書者之錯, 不敢擅節, 以遺後賢
43	佛說受新歲經 권1	1243	國本, 宋本, 丹藏, 開元錄
44	十誦律 권5	무간기	丹本, 國本, 宋本
45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권20	1244	丹本, 國本, 宋本
46	彌沙塞五分戒本 권1	1245	國本, 宋本, 丹本
47	沙彌尼離戒文 권1	1244	國本, 宋本, 開元錄, 丹本
48	四分比丘尼羯磨法 권1	1245	宋本, 國本, 丹本
49	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권1	1245	國本, 丹本, 宋本
50	說一切有部集異門足論 권14	1244	宋本, 二本, 國本, 宋本
51	阿毘曇毘婆沙論 권14	1244	校正後序, 國本妄加耳
52	阿毘曇毘婆沙論 권24	1244	宋本, 國本, 二本
53	阿毘曇毘婆沙論 권55	1244	校正序, 宋本, 國本, 丹本
54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14	1244	宋本, 二本

차례	불전명 및 권수	간년	교정별록 수록 교감기와 유사한 용어
55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32	1244	宋本, 國丹二本
56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109	1244	宋本, 二本
57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199	1245	宋藏, 二本
58	舍利弗阿毘曇論 권24	1244	勘第十九卷, 脫字, 故以指之
59	分別功德論 권5	1245	丹藏, 開元錄, 僧祐錄
60	十八部論 권1	1245	宋藏, 國本, 開元錄
61	菩薩本緣經 권상	1244	國本, 宋本, 丹藏
62	金七十論 권상	1245	開元錄, 長房內典二錄
63	集古今佛道論衡 권4	1244	國本, 宋本, 丹本 重校序, 守其 序
64	集神州三寶感通錄 권상	1245	宋本, 二本, 又爲看舊宋藏者, 具錄正文于左
65	道宣律師感通錄 권1	1246	可洪音疏云, 故在此函
66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 권1	1246	國本, 丹本
67	八大菩薩曼荼羅經 권1	1246	錯, 正之云
68	大日經略攝念誦隨行法 권1	1246	國(本), 宋本(藏), 續開元釋教錄
69	佛說佛名經 권1	1246	按曰, 國本, 衆經目錄, 開元錄

한편 권내교감기의 글자체의 크기는 細註형식의 작은 자와 본문과 동일한 자 등 2종류가 있다. 대체로 보면 작은 자는 1239년부터 1244년, 본문과 동일한 자는 1243년부터 1246년까지 걸쳐있다. 양자가 중복되는 계묘년(1243)과 갑진년(1244)이 세주형식의 소자크기에서 본문과 동일한 자로 바뀌는 분기년이 된다. 이렇게 1243년부터 진행된 작은 자 크기의 권내교감기를 본문과 동일한 자로 수정한 것 역시 독자적인 대장경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4. 교감기의 대비

앞의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권내교감기 중에서 문장형식의 교감기 69건을 교정별록 수록본과 대비하니 <표 4>와 같았다. 여기서는 교정별록과의 대등한 대비를 위해 권내교감기의 기세경 권1과 기세인본경 권1 등 2건을 1건으로 취급하였다.⁴¹⁾

<표 4> 교정별록과 권내교감기에 수록된 불전의 대비⁴²⁾

차례	함	교정별록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의 판각처 및 특징
1	服	決定毘尼經	×	
2	服	須摩提經	×	
3	推	大集經 권1	大方等大集經 권1	없음
4	讓	×	大方等大集經 권30	대장도감
5	虞	大集經 권59	大方等大集經 권59	대장도감
6	伐	般舟三昧經 권3	×	
7	鳳	正法華經 10권	×	
8	王	普羅經 8권	×	
9	鞠	(단본)佛說月燈三昧經 1권 ⁴³⁾	(국송본)佛說月燈三昧經	대장도감
10	鞠	(단본)月燈三昧經 1권 ⁴⁴⁾	(단본)佛說月燈三昧經	대장도감
11	養	佛說彌勒下生經	佛說彌勒下生經	대장도감
12	養	佛說彌勒下生成佛經	佛說彌勒下生成佛經 ⁴⁵⁾	대장도감
13	敢	佛說申日經	佛說申日經	대장도감
14	傷	×	佛說灌洗佛形像經 권1	대장도감
15	傷	×	佛說摩訶刹頭經 권1	
16	才	六字神呪經	六字神呪經 권1	대장도감
17	良	×	最勝佛頂陀羅尼淨除業障呪經 권1	대장도감
18	良	×	佛頂尊勝陀羅尼經 권1	대장도감
19	知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대장도감
20	知	最勝燈王如來經	×	
21	必	須真天子經	佛說須真天子經 권1	대장도감
22	罔	賢劫經 8권	×	
23	己	×	佛說佛名經 권9 ⁴⁶⁾	대장도감

41) 교정별록에서는 起世經(澄함)과 起世因本經(取함)을 1권의 교감기로 편성해 놓았다. 그래서 적합한 대비를 위해 이 둘을 합하여 1건으로 삼으니 68건이 되었다.

42) 교정별록에서는 불전명을 약칭한 사례가 있어 권내교감기에 있는 정식명칭과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승석은 “고려대장경의 편제중 불전명의 정식화 양상”(『고려대장경의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6), 61)에서 “대부분의 대장경 목록에 기재된 불전명은 고려대장경이 정식으로 채택한 불전명의 약칭 또는 별칭이며, 이 점에서 불전명은 고려대장경의 특징으로 지적될 만한 것이다.”고 하였다.

43) 교정별록의 도치.

44) 교정별록의 도치.

45) 義淨 譯. 교감기는 4행.

46) 菩提流支 譯.

차례	함	교정별록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의 판각처 및 특징
24	己	×	佛說佛名經 권10	대장도감
25	覆	×	佛說菩薩本行經 권상	대장도감
26	悲	×	五佛頂三昧陀羅尼經 권4	대장도감
27	詩	蘇悉地羯羅供養法 3권	蘇悉地羯羅供養法 권상 ⁴⁷⁾	대장도감
28	詩	×	蘇悉地羯囉經 권하	대장도감
29	讚	×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권1	없음
30	羔	魔逆經	佛說魔逆經 권1	대장도감
31	作	大智度論 권4	×	
32	聖	大智度論 권14	×	
33	建	大智度論 권31	×	
34	谷	×	大乘寶積經論 권1	대장도감
35	谷	大寶積經論 4권	×	
36	曰	攝大乘論釋 권9	攝大乘論釋 권9 ⁴⁸⁾	대장도감
37	當	×	中邊分別論 권상	대장도감
38	當	決定藏論	×	
39	竭	寶性論 권2	×	
40	力	×	唯識二十論 권1	대장도감
41	力	轉識論	×	
42	命	(단본)法界無差別論 1권 ⁴⁹⁾	(국송본)大乘法界無差別論 권1	대장도감
43	命	(국송본)法界無差別論 ⁵⁰⁾	(단본)大乘法界無差別論	대장도감
44	薄	中阿含經 권11	×	
45	薄	中阿含經 권15	×	
46	松	雜阿含經 권4	雜阿含經 권4	대장도감
47	川	雜阿含經 권34	×	
48	不	別譯雜阿含經	別譯雜阿含經 권5	대장도감
49	息	×	別譯雜阿含經 권13	대장도감
50	澄, 取	起世經(澄)·起世因本經(取) ⁵¹⁾	起世經 권1 起世因本經 권1	대장도감 대장도감
51	映	大樓炭經 권1	×	
52	映	中本起經 권하	×	

47) 권상과 교정별록 수록의 3권은 내용이 동일함.

48) 眞諦 譯.

49) 교정별록의 도치.

50) 교정별록의 도치.

51) 교정별록은 1건으로 통합하여 교감.

守其의 家系와 권내교감기

차례	합	교정별록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의 판각처 및 특징
53	容	受歲經	佛說受歲經 권1	대장도감
54	止	佛說頻毘娑羅詣佛供養經	頻毘娑羅王詣佛供養經 권1	대장도감
55	若	舍衛國王十夢經	舍衛國王夢見十事經 권1	대장도감
56	若	佛說四未曾有經 권1	佛說四未曾有經 권1	대장도감
57	思	×	摩登伽經 권하	대장도감
58	言	×	佛說海八德經 권1	대장도감
59	籍	本事經 권3	本事經 권3	없음
60	甚	大安般守意經 2권	佛說大安般守意經 권하	대장도감
61	竟	受新歲經	佛說受新歲經 권1	대장도감
62	竟	護淨經	×	
63	攝	十誦律 권5	十誦律 권5	없음
64	樂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권20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권20	대장도감
65	隨	彌沙塞五分戒本	彌沙塞五分戒本 권1	대장도감
66	隨	摩訶僧祇比丘尼戒本	×	
67	外	沙彌尼離戒文	沙彌尼離戒文 권1	대장도감
68	傳	四分比丘尼羯磨 1권	四分比丘尼羯磨法 권1	대장도감
69	入	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1권	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권1	대장도감
70	諸	鼻奈耶 10권	×	
71	子	阿毘曇八捷度論 권6	×	
72	子	阿毘曇八捷度論 권8	×	
73	孔	發智論 권8	×	
74	同	集異門足論 권14	說一切有部集異門足論 권14	대장도감
75	分	阿毘曇毘婆沙論 권14	阿毘曇毘婆沙論 권14	분사대장도감 校正後序
76	切	×	阿毘曇毘婆沙論 권24	분사대장도감
77	規	×	阿毘曇毘婆沙論 권55	분사대장도감 校正序
78	慈	阿毘達摩大毘婆沙論 권14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14	대장도감
79	惻	阿毘達摩大毘婆沙論 권32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32	대장도감
80	弗	大毘婆沙論 권65	×	
81	廉	大毘婆沙論 권109 ⁵²⁾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109	대장도감
82	逸	大毘婆沙論 권199	說一切有部發智大毘婆沙論 권199	대장도감
83	逸	大毘婆沙論 권200	×	
84	面	×	舍利弗阿毘曇論 권24	대장도감

52) 교정별록은 국단본, 권내교감기는 송본을 주체로 설명함.

차례	함	교정별록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수록 불전	권내교감기의 판각처 및 특징
85	渭	分別功德論 권5	分別功德論 권5	대장도감
86	渭	十八部論	十八部論 권1	대장도감
87	觀	菩薩本緣經 권상	菩薩本緣經 권상	대장도감
88	驚	雜寶藏經 권5	×	
89	畫	金七十論 3권	金七十論 권상	대장도감
90	星	×	集古今佛道論衡 권4	분사대장도감 重校序, 守其序
91	右	神州三寶感通錄 3권	集神州三寶感通錄 권상	대장도감
92	旣	辨正論 권7	×	
93		×	道宣律師感通錄 권1	대장도감
94	佐	一字頂輪王經 권1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 권1	대장도감
95	執	佛說木槵經	×	
96	右	×	八大菩薩曼荼羅經 권1	대장도감
97	執	×	大日經略攝念誦隨行法 권1	대장도감
98	傾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권13	×	
99	廻·漢	釋摩訶衍論 권10(廻)· 大宗地玄文本論 권20(漢)	×	
100	俊父密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	×	
101	寧晉楚	佛名經 30권	佛說佛名經 권1	대장도감

<표 4>에서 보듯이 전 101건의 교감기 중에서 교정별록과 권내교감기에 함께 수록된 것은 전체의 43.6%에 해당하는 4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57건은 어느 한 쪽에는 수록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교정별록에 수록된 77건 중에서 권내교감기에 없는 것은 33건이고, 권내교감기에 수록된 68건 중에서 교정별록에 없는 것은 24건이나 되는 것이다. 교정별록에 수록된 77건과 권내교감기에 수록된 68건은 전 101건 중의 76.2%, 67.3%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만을 본다면 약 30% 전후의 교감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자 모두를 확인해야 전체의 교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 10년에 걸쳐 완성된 권내교감기와는 달리 2년의 단기간에 걸쳐 완성된 교정별록이 권내교감기보다 월등한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짐작한다면, 대장경조성 사업이 워낙 방대한 탓에 이전의 교감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두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양자 간의 상관성에 대한 이 비교는 교정별록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곧 권내교감기 중에서 문장형식의 교감기 모두가 교정별록에 수록되었다면, 교정별록은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관성 비율에서 보듯이 교정별록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교정별록의 한 교감기에서 보여준다. 곧 교정별록이 입장된 준예밀함에는 원래 중범이 지은 일체경원품차록 30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차록은 “여러 경전의 처음과 끝의 말들을 모은 것으로 유익한 바가 거의 없기에 삭제하고, 새로 교정별록 30권을 지어 편입한다.”⁵³⁾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정별록은 처음부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축년(1247) 경에 대체시킬 불전이 필요하자 새로 완성하여 편입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이 된다. 곧 교정별록의 교감기 중에는 병오년에 판각된 보리장소설일자정륜왕경 권1과 불설불명경 권1의 교감기가 있다. 병오년은 고종 33년(1246)으로 대장목록을 제외한 대장경 전체가 거의 완성된 시기이다. 교정별록은 병오년과 이듬해인 정축년(1247)에 모두 완성되었다. 교정별록의 교감내용과 동일한 교감내용이 대장경이 거의 완성되던 시기까지 권내에 수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두 작업이 최소한 당시까지는 상관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69건의 권내교감기 중에서 아비담비바사론 권14·24·55와 집고금불도론형 권4 등 4건은 갑진년, 곧 고종 31년(1244)에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것이다. 그런데 분사대장도감에서 새긴 이들의 특징은 완연히 나타난다. 곧 아비담비바사론 권14에서는 “校正後序”, 아비담비바사론 권5에서는 “校正序”, 집고금불도론형 권4⁵⁴⁾에서는 “重校序”, “守其序” 등과 같이 序題를 갖춘 형식으로 되어

53)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 제38책, p.724. “右三函中, 國本有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 沙門從梵撰者. 今檢, 但是標舉, 諸經卷中首尾之言, 於看覽藏經者, 所益無機. 今且除之, 新撰校正別錄三十卷, 編其函焉.”

54) 集古今佛道論衡四卷重校序. “按此一部四卷之書, 其第四卷, 國本與宋本則同, 唯八紙耳. 丹

있는 것이다. 1244년에 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을 포함하여 대장도감에서 새긴 다른 목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일체 없다. 이 교감기들은 수기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사대장도감과 관련성이 엇보이기도 하므로 향후 분사대장도감의 연구영역에 포함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이 4건 중에는 아비담비바사론 권14의 1건만이 교정별록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3건이 교정별록에 수록되지 못한 것은 교감을 담당하던 수기 역시 교감기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장목록의 순서⁵⁵⁾를 도치한 교정별록의 사례도 <표 4>에서 볼 수 있다. 곧 鞠 함의 불설월등삼매경과 불설월등삼매경 1권, 命 함의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과 대승법계무차별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두 단본을 앞세우고, 국송본을 뒤에 둔 것으로 보아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5. 결 언

이 글에서는 먼저 수기의 가계를 『동국이상국집』과 『인동유씨족보』를 통해 살폈다. 또한 각 불전에 있는 교감기에서 사용된 “鄉本” 등의 명칭이 교정별록에서는 “國本” 등으로 수정된 사실을 소개하고, 문장형식의 권내교감기를 선별하여 교정별록과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별본계통의 『보한집』 사본에는 수진이 아니

本大多至三十四紙。非唯多小不同，文義亦不相涉。又前第三卷，國本與宋本則同，丹本始終迥異者，何耶？今進退檢校，宋本錯亂，失第三卷，妄引第四卷，爲第三卷。於第四卷，則傍引道士郭行真捨道歸佛之文十餘段，凡八紙補爲一卷。國本依宋，故同錯耳。今詳此一部，撰集之體，始自漢明帝，終至唐高宗。歷紀帝代，佛道論衡，而國本宋本之第三卷，凡七條事，即唐高宗時事也。今於第四卷八紙，後所連寫十條之事。是高祖太宗時事也。然則先後倒錯，勢必不然，理須正之。今依丹本，以高祖太宗時十事，爲第三卷。高宗時七事爲第四卷，而正焉。其郭行真捨道歸佛之文，并附于尾云。守其序。”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55) 대장목록 권중.

56) 이 외에도 竟 함의 호정경, 수신세경과 隨 함의 마하승지비구니계본, 미사색오분계본의 차례가 교정별록에는 수신세경과 호정경, 미사색오분계본, 마하승지비구니계본으로 각각 도치되어 있다.

라 수기로 되어 있다는 부수적인 소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규보는 자신과 수기와의 관계에 대해 “親緣”, “親因”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予婦之堂弟”, 곧 부인의 당제라고 하였다. 당시의 당제란 지금과 마찬가지로 4촌이나 6촌 아우 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수기의 본성은 이규보의 부인과 같은 “晉壤 晉氏”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성씨 중에 “진양”을 본관으로 삼은 진씨는 없다.

둘째, 유승단의 제문에는 아들이 없던 유승단이 생전에 수기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였고, 자신이 죽은 뒤의 일도 수기에게 부탁하였다고 한다. 죽은 뒤의 일, 곧 유승단의 장례나 제사를 수기가 주도하였는지는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守其는 유승단을 시조로 하는 『인동유씨족보』에 守基라는 이름으로 입적되어 있고, 또 제사를 모신 사실이 전한다. 초기의 족보에는 유승단의 직계, 곧 아들로 되어 있었다고도 하나 현전하는 족보에는 손자(2세)로 입적되어 있다.

셋째, 1239년부터 1244년까지 완성된 권내교감기 중에는 국본은 향본, 국송본은 송향본(장) 또는 향송본, 국단본은 단향본 또는 향단본으로 일컫는 사례가 21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21건 중에서 교정별록에 수록된 4건의 교감기에서는 “향”은 “국”으로, 송향본 또는 단향본은 국송본 또는 국단본으로 수정해 놓았다. 이렇게 수정한 의도는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의 자주성과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고종 33년(1246) 초기, 곧 대장경이 거의 완성될 때 까지 줄곧 계속 진행된 권내교감기는 권중과 권말에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권중에 있는 것은 주로 단편적인 교감결과이고, 권말에 있는 것은 교정별록 수록의 교감기와 유사한 문장 형식이다. 이 중에서 문장형식의 교감기는 69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24건은 교정별록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었다.

다섯째, 권내교감기 중에서 아비담비바사론 권14·24·55와 집고금불도론형 권4 등 4건은 갑진년, 곧 고종 31년(1244)에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것이다. 그런데 아비담비바사론 권14에서는 “校正後序”, 아비담비바사론 권5에서는 “按

正序”, 집고금불도론형 권4에서는 “重校序”, “守其序” 등과 같이 序題를 갖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장도감 판각본은 이러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의 교감기는 향후 분사대장도감의 연구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자료

『고려사절요』.

『동문선』.

『類伽精舍大藏經』 권38 목록부. 상해: 빈가정사, 1913.

『麗藏新雕本校記』. 남경: 내학원, 1935.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강화]: [강화군], 2011.

『여주이씨세보』. 서울: 여주이씨문순공파대종회, 1989.

『인동유씨족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고조-58-30-3, 고조58-가30-5).

『인동유씨족보』. 석인본. 1929.

『인동유씨족보』. 경성: 유한모, 1921.

『인동유씨족보』. 서울: 인동유씨중친회, 1985.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昭和法寶總錄』 제2권. 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34.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일본 대곡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index.do>>.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해인사팔만대장경』. <<http://www.i80000.com>>.

2. 저작 및 논문

- 강순애. “고려대장경교정별록의 학술적 의의.” 『서지학연구』 제20집(2000).
- _____.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의 분석을 통해 본 초조 및 재조대장경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7집(1994).
- 권문해. 『大東韻府郡玉』. 서울: 소명, 2003.
-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 김윤근. “고려 ‘국본’대장경의 혁신과 배경.” 『민족문화논총』 제27집(2003).
- 배상현.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과 수기.” 『민족문화논총』 제17집(1997).
- 오용섭.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연구.” 『서지학연구』 창간호(1986).
- _____. “교정별록의 완성과 입장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18집(1999).
- 오윤희.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서울: 불광, 2011.
- 유부현. “고려재조대장경에 수용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2호(2004).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서울: 보림각, [1972].
- 장애순 외. 『고려대장경의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6.
- 천혜봉. 『나려인쇄술의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최연주. 『고려대장경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최 자. 『보한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58-30-3).
- 허흥식. 『한국중세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4.
- 呂 澂. “宋刻蜀版藏經.” 『呂澂佛學論著選集 3』. 濟南: 齋魯書社, 1991.
- 宓氏祐祥. “大藏經の宋本, 契丹本並に高麗本の系統.” 『佛教學の諸問題』. 東京: 岩波書店, 1935.
- 常盤大定. “大藏經雕印考.” 『哲學雜誌』 제321-2호([191-]).
- 神尾一春. 『契丹佛教文化史考』. 大連: 滿洲文化協會, 1937.

